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 2
----------	---------

제출일자	2004. 5. .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사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제 3 2)
- 토요일 휴무를 2004. 7. 1. ~ 2005. 7. 1. !부터는 전면 실시 함(: 제16 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 -2) 1 , , 2006 ! 1 1~ . (13 , 16 2 및 제18)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 3 .(3)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 :
- 지방공무원법 제59 :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2항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 2()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항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 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 2항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월 18일 , ,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월 .
- ② 점심시간은 12월 13일 , ,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 2항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 2() ①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 1 다음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	6 미만	3
6	1 미만	6
1	2 미만	9
2	3 미만	12
3	4 미만	14
4	5 미만	17
5	6 미만	20
6 이상		21

별표3

1 3

<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부 칙

①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제16 2 1 2004 7 1 , 2005 6 30 까
지는 월 2]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 제1 2006 1 1
일부터 시행한다.

신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p>제3 2()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3 () ① '부원의 근무시간은 3 1 10 말일까지는 9 18 , 11 1 부터 다음연도 2 9 부터 17 , 토요일의 총 근무시간은 제16 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 ,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p> <p>② '식시간은 12 13 까지로 한다. , 13 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 () ① '부원의 근무시간은 9 18 . 토요일의 총 근무시간은 13 .</p> <p>② 심시간은 12 13 까지로 한다. ,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6 2()</p> <p>① '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 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6 2()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p>

제18 () ① '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 6 미만	4
6 1 미만	7
1 2 미만	10
2 3 미만	13
3 4 미만	16
4 5 미만	19
5 6 미만	22
6 이상	23

< 3> 정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제18 () ① -----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 3> 정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